

[별표 5]<개정 1989.5.22, 1992.10.2>

불합격수축및축산물에대한처리
(제24조제2항관련)

1.도축검사

가.생체검사

이 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해체검사

1)해체검사결과 이 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인 때에는 해체를 중지시키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리를 취하여야 한다.

2)검사결과 일부 또는 전부를 식용으로 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축검사기준에 의하여 검사원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검사

검사결과 수육중의 잔류물질이 그 허용기준을 넘은 때에는 식용으로 공할 수 없다.

라. 폐기물의 처리

육·내장과 골 기타의 폐기물은 세분 절단하여 완전소각 또는 100℃에서 30분이상 자비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도체는 3% 크레졸수 또는 3% 석탄산수를 충분히 살포한다.

2)기구 3% 크레졸수 또는 3% 석탄산수에 충분히 침적시킨다.

3)작업장은 3% 크레졸 또는 3% 생석회·크로루석회, 5% 크로루수·석회수를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4)위장내용물은 일정한 장소에 수집하여 3% 크레졸수·생석회 또는 3% 석탄산수를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5) 1) 내지 4)이외의 소독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불합격수축의 표시방법

생체검사 결과 불합격된 수축은 다음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두부의 이마부분에 적색 또는 청색으로 잘 보이도록 크게 X표를 한다.

2)흉부의 양도체 중간 및 배부 중간전에는 1)에 준하여 표시한다.

2.착유우(양)검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검사성적이 60점미만일 때에는 해당목장의 원유에 대하여 3일간 납유를 금지한다.

3.원유검사

원유위생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불합격 처분기준

구	분	처	분	내	역
○수유검사 결과 부적합		당해원유	납유금지		
○유해물질(항생물질등)검출		당해목장에 대하여	검사결과		
○중화·살균·균증식억제 및 보관을 위한 약		판정일로부터 3일간	납유금지		

제첨가 ○유량증가를 위한 가수행위, 가염행위 등 ○적정산도시험 ○세균수시험·체세포수시험	동일 시험항목에서 3회연속 검사 기준초과시 당해목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 판정일로부터 1일간 납유금지
---	---

나. 불합격 처분기준에 의하여 당해목장의 원유에 대하여 납유를 금지할 때에는 원유위생검사결과 및 납유금지기간등을 당해목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목장의 원유위생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납유금지기간이 경과하여 당해목장의 원유에 대하여 납유를 재개한 때에는 재재당일 원유수집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불합격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가목의 불합격 처분기준중 수유검사결과 부적합한 원유에 대하여는 식용색소를 혼입한다.

4. 시설검사

시설검사 결과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위해를 제거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케 하여야 한다.